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55 호

2002 년 5 월 24 일 금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7호 (2002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결정고시)-----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8호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3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도로개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구월동289번지부근도로 <소1-43호선> 외6개공공사업)」)---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4호 (인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위한공람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6호 (2002년도 「살기좋은아파트」 선정계획공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7호 (2002년종합토지세과세자료변동신고 · 공람및이의신청에관한공고)----- 2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8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택지개발사업:인천장수지구))---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0호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3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4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도시계획사업:인천대공원조성공사))----- 6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7호

2002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적 용 비 율 의 결 정

-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2.9%로 한다.
- ② 2001년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	30%미만	38%이상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8.0%	39.0%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28호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고 제1997-9호 '97. 1. 13) 지구 지정되고 주거환경개선계획(남동구 고시 제1999-6호 '99.1.14)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2·4항 규정에 주거환경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53-2682) 및 만수2동 사무소(☎ 463-0002)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2.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지구의 명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22,181㎡(6,710평)(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8년 12월 ~ 2005년 12월 31일

변경 ⇒ 2002년 05월 ~ 200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바.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의 내용

1). 주택개량방식 : 당초 ⇒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건립 : 18층 467세대)

변경 ⇒ 현지개량방식(단 주택개량은 주민)

2). 도시기반시설 : 도로망 확충·주차장·공원·상·하수도 설치 및 정비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총계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현지개량용지	전면개량용지	소계	도로	공원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준치지역
기정	22,181	20,515	-	20,515	1,666	943	-	-	436	287
	100	92.5	-	92.5	7.5	4.2	-	-	2.0	1.3
변경	22,181	13,765	13,765	-	8,416	6,689	1,142	585	-	-
	100	62.1	62.1	-	37.9	30.2	5.1	2.6	-	-

4). 도시계획사항의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안)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만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남동구 만수2동 1번지 일원	22,181	

○ 용도지역의 세분 결정(변경) 조서(안)

구분	기정(m ²)	변경(m ²)	변경후(m ²)	비고
일반주거지역	22,181	감 22,18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181	22,181	

○ 도로결정(변경) 조서(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273 (273)	소1-1	만수동 1-12번지	일반	소2-229	'77 10. 11	(지구외 구간)
신설	소로	2	229	8	국지	89	소2-2	소3-86	일반	소3-87 소3-92		
신설	소로	3	86	6	국지	177 (66)	소2-229	소2-2	일반	만수2동 산1-11		(1)는 지구내 ●도시자연공 원과 일부구간 중복결정(111m)
신설	소로	3	87	6	국지	83	소2-229	소3-86	일반	소3-89		
신설	소로	3	88	6	국지	100	소2-229	소3-87	일반	소3-89 소3-90		
신설	소로	3	89	6	국지	55	소3-88	소3-87	일반	만수2동 1-199		
신설	소로	3	90	6	국지	15	소2-2	소3-88	일반	만수2동 1-16		
신설	소로	3	91	6	국지	167	소2-2	소2-229	일반	만수2동 1-283		
신설	소로	3	92	6	국지	87	소3-91	소2-229	일반	만수2동 1-118		
신설	소로	3	93	6	국지	53	소2-2	소2-229	일반	만수2동 1-46		

○ 공원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만 부 1호공원	-	만수동 1-111번지 일원	-	증798	798		지 하 주 차 장 중복결정
신설		만 부 2호공원	-	만수동 1-265번지 일원	-	증354	354		

○ 주차장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노외주차장	만수동 1-150번지 일원	-	증 375	375		
신설		노외주차장	만수동 1-61번지 일원	-	증 210	210		

2. 건축물의 개량계획

구 분	건 축 물 개 량 계 획
허용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단 1층은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확보시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에 한함 단 변전소, 정수장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높이(층)	- 3층 이하 (단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피로티구조를 포함하여 4층 이하)
기타사항	- 기타 상기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로 적용 (공포일 : '01. 10. 15)

3. 개선계획(변경)수립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1999-6호('99. 1. 14)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건립)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초기투자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참여 기피로 개량방식 변경(전면개량방식⇒현지개량방식)이 불가피 하고,
-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건축행위제한 등 주민생활불편 가중으로 개량방식 (현지개량) 변경을 요하는 주민의견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건축허가등 제한 공고(남동구공고 제97-10호)사항에 대한 해제
 - 해제범위 :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A=22,181m²)
 - 해제일자 : 관보고시일로부터
5.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도서 : 게재생략
6.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지구의 토지(사용 또는 수용할) 조서 : 불임

만부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지구의 토지(사용 또는 수용할)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토지이용계획상면적(㎡)			
	동	번지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택용지	산지공원	주차장	도로
1	만수2동	1-15	대지	243	243	인천 남구 만수동 1-15	문길남	대지	243.0			-
2	만수2동	1-16	대지	241	241	인천 남구 만수동 1-16	이진한	대지	154.0			87.0
3	만수2동	1-17	대지	240	240	서울 구로 시흥동 1002-1,2 력키 아파트 6동 507호	김문희	대지	222.0			18.0
4	만수2동	1-18	대지	245	245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 주공아 파트 1102동 904호	전유형	대지	238.0			7.0
5	만수2동	1-30	대지	170	170	서울 금천 시흥동 1002-1,2 력키 아파트 9-212호	김문희	대지	160.0			10.0
6	만수2동	1-31	도로	4,901	4,901		인천시	도로	308.0	210.0	38.0	4,345.0
7	만수2동	1-35	대지	130	13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6	이상례	대지	130.0			-
8	만수2동	1-36	대지	130	130	인천 남동 만수동 1-36	권웅진	대지	71.0			59.0
9	만수2동	1-37	대지	130	130	인천 남동 만수동 996 삼환아파트 203동 201호	강옥선	대지	44.0			86.0
10	만수2동	1-38	대지	122	122	인천 남동 만수동 1-38	윤일구	대지	119.0			3.0
11	만수2동	1-39	대지	122	122	인천 남동 만수동 5-67	황찬익	대지	122.0			-
12	만수2동	1-40	대지	122	122	인천 남동 만수동 1-40	김성자	대지	122.0			-
13	만수2동	1-41	대지	124	124	인천 남동 만수동 1-40	강은영					
14	만수2동	1-42	도로	1,106	591	인천 남동 만수동 1-40	강희남					
15	만수2동	1-43	대지	148	148	인천 남동 만수동 1-41	이역형	대지	124.0			-
						인천 남동 만수동 6-21 신한아파 트 2동 102호	인천시	도로	113.0			478.0
							최춘지	대지	139.0			9.0

16	만수2동	1-44	대지	128	128	경기 인천군 대월면 초지리 448	남옥희	대지	119.0			9.0
17	만수2동	1-45	대지	124	124	전남 영암군 삼호면 웅당리 2블록 한라2차Apt 201-901	이만우	대지	123.0			1.0
18	만수2동	1-46	대지	122	122	인천 남동 만수동 5-307 삼부아파트 다동 306호	이상식	대지	122.0			-
19	만수2동	1-47	대지	124	124	인천 남동 만수동 116-18	조영규	대지	124.0			-
20	만수2동	1-48	대지	100	100	인천 남동 만수동 1-48	최천일	대지	100.0			-
21	만수2동	1-49	대지	118	118	인천 남동 만수동 1-49	서영식	대지	118.0			-
22	만수2동	1-60	대지	92	92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윤기순	대지		47.0	45.0	
23	만수2동	1-61	대지	145	145	인천 남동 만수동 1-61	고영호	대지		103.0	42.0	
							인천시 남동구					
24	만수2동	1-62	대지	59	59	인천 남구 주안동 26-8 태화아파트 1동 2102호	김춘식	대지		12.0	47.0	
25	만수2동	1-63	대지	65	65	인천 남동 만수동 1-63	유동기	대지	48.0		17.0	
26	만수2동	1-64	대지	92	92	인천 남동 만수동 1-64	진재숙	대지	78.0		14.0	
						인천 남동 만수동 1-64	안홍자					
27	만수2동	1-66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67	이우삼	대지	33.0		-	
28	만수2동	1-67	대지	3	3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	이대화	대지			3.0	
29	만수2동	1-68	대지	11	11		인천시	대지			11.0	
30	만수2동	1-69	대지	69	69	인천 남동 만수동 1-69	이평순	대지	62.0		7.0	
31	만수2동	1-70	대지	70	70	인천 남동 만수동 1-70	허화자	대지	70.0		-	
						인천 남동 만수동 1-70	김인동					
32	만수2동	1-71	대지	92	92	인천 남동 만수동 1-71	황화자	대지	92.0		-	
						인천 남동 만수동 1-218	설재호				-	

33	만수2동	1-72	대지	69	69	인천 남동 만수동 1-72	강응구	대지	69.0			-
34	만수2동	1-73	대지	86	86	인천 남동 만수동 1-73	이세화	대지	86.0			-
35	만수2동	1-74	대지	127	127	인천 남동 만수동 1-74	박홍배	대지	91.0			36.0
36	만수2동	1-75	대지	104	104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403 두산아파트 105동 503호	김순옥	대지	51.0			53.0
37	만수2동	1-76	대지	37	37	인천 남동 만수동 1-76	이천덕	대지	7.0			30.0
38	만수2동	1-77	대지	65	65	인천 남동 만수동 1-77	채주병	대지	12.0			53.0
39	만수2동	1-78	대지	74	74	인천 남동 간석동 330-1	윤백수	대지	11.0			63.0
40	만수2동	1-79	대지	103	103	인천 남동 만수동 1-79	한정임	대지	103.0			-
41	만수2동	1-80	대지	70	70	인천 남동 만수동 1-80	이병철	대지	70.0			-
42	만수2동	1-81	대지	70	70	인천 남동 만수동 1-81	박상태	대지	70.0			-
43	만수2동	1-82	대지	98	98	인천 남동 만수동 6-12	최영희	대지	98.0			-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이성운					
						인천 남동 만수동 1-82	임종근					
44	만수2동	1-83	대지	104	104	인천 남동 만수동 6-10	이판선	대지	71.0			33.0
						인천 남동 만수동 1-83	김윤식					
						인천 남동 만수동 1-10	신철호					
							인천시					
45	만수2동	1-84	대지	37	37		인천시 남동구	대지	37.0			-
46	만수2동	1-85	대지	133	133	인천 남동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2동 1405호	이성철	대지	133.0			-
						인천 남동 만수동 1-85	김예자					
							인천시 남동구					

47	만수2동	1-86	대지	133	133	인천 서구 연희동 682-1 중앙아파트 609호	방미자	대지	133.0		-
						인천 남동 만수동 1-86	이난식				
						인천 남동 만수동 5-307 심부아파트 다동 502호	윤연례				
48	만수2동	1-87	대지	72	72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웅재효	대지	72.0		-
49	만수2동	1-88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현종락	대지	48.0		18.0
50	만수2동	1-89	대지	50	50	인천 남구 용현동 174-30	박정식	대지	34.0		16.0
51	만수2동	1-90	대지	73	73	인천 남동 만수동 1-90	박성대	대지	69.0		4.0
52	만수2동	1-91	대지	74	74	인천 남동 만수동 1-91	채영숙	대지	74.0		-
53	만수2동	1-92	대지	50	50	인천 남동 만수동 1	김용범	대지	50.0		-
54	만수2동	1-93	대지	43	43	인천 남동 만수동 1-93	김영희	대지	43.0		-
55	만수2동	1-94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94	권형섭	대지	66.0		-
56	만수2동	1-95	대지	41	41	인천 남동 만수동 1-95	고명현	대지	41.0		-
57	만수2동	1-96	대지	55	55	인천 남동 만수동 1-96	이기준	대지	55.0		-
58	만수2동	1-97	대지	104	104		인천시 남동구	대지	104.0		-
						인천 남동 만수동 1-97	현병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이미정49.6/104)				
59	만수2동	1-98	대지	28	28	인천시 423	인천시	대지	28.0		-
60	만수2동	1-99	대지	115	115	인천 남동 만수동 1-99	김복례	대지	115.0		-
						인천 남동 구월동 7-67	권혁란				
						인천 남동 만수동 1-99	임문웅				
61	만수2동	1-100	대지	29	29	인천 남동 만수동 1-98	이홍세	대지	29.0		-

62	만수2동	1-101	대지	41	41	인천 남동 만수동 1-102	배두기	대지	41.0		-
63	만수2동	1-102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02	이만재	대지	33.0		-
64	만수2동	1-103	대지	98	98	인천 남동 만수동 5-426 신동아아파트 7동 1507호	김미숙	대지	98.0		-
						인천 남동 만수동 1-103	김상웅				
65	만수2동	1-104	대지	49	49	인천 남동 만수동 1-104	하홍백	대지	43.0		6.0
66	만수2동	1-105	대지	109	109	경기 파주 교하면 교하리 316	박지연	대지	22.0		87.0
						안산시 일동 620-7	임귀복				
						인천 남동 만수동 1-105	임귀재				
						안산시 일동 620-7	임귀삼				
						안산시 일동 620-7	임귀정				
						안산시 이동 540-5	임귀훈				
						인천 남구 용현동 286-9	영남건설				
						한구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사업공제조합					
67	만수2동	1-106	대지	127	127	부천 오정 고강동 292-8 부촌2차 아파트 나-205호	강경혜	대지	40.0		87.0
						인천 남동 만수동 산20	김진호				
						인천 남동 만수동 1-106	김여득				
68	만수2동	1-107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07	한상섭	대지	33.0		-
						국제기업주식회사, 남동구의료보험조합					
69	만수2동	1-108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34	김상진	대지	33.0		-
70	만수2동	1-109	대지	83	83	인천 남동 만수동 1-109	김수덕	대지	7.0		76.0
71	만수2동	1-110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10	장종식	대지	33.0		-

72	만수2동	1-111	대지	32	32	인천 연수 연수동 502-9	민경희	대지		32.0		-
73	만수2동	1-112	대지	34	34	인천 남동 만수동 2-23 신한상가 102호	최은숙	대지		32.0		2.0
74	만수2동	1-113	대지	115	115	인천 남동 만수동 1-113	김점향	대지	91.0			24.0
						인천 남동 만수동 1-113	박인수					
75	만수2동	1-114	대지	139	139	인천 남동 만수동 1-114	이종형	대지	139.0			-
						인천 남동 만수동 1-113	박인수					
							인천시 남동구					
76	만수2동	1-115	대지	51	51	인천 남구 만수동 1-115	김현남	대지	51.0			-
77	만수2동	1-116	대지	193	193		인천시 남동구	대지		193.0		-
						인천 남구 만수동 1-116	김난초					
						인천 남구 만수동 1-131	김갑환					
78	만수2동	1-117	대지	67	67	인천 남동 만수동 1-117	김안태	대지		67.0		-
79	만수2동	1-118	대지	336	336	인천 남동 만수동 1-118	만수교회	대지	336.0			-
							인천시남동구					
80	만수2동	1-119	대지	121	121	인천 남동 만수동 1-120	박철수	대지	95.0			26.0
						인천 남동 만수동 79-3	박병길					
						인천 남동 만수동 1-120	박종산					
						인천 남동 만수동 1-119	강순임					
81	만수2동	1-120	대지	74	74	인천 남동 만수동 1-120	정명철	대지	74.0			-
82	만수2동	1-121	대지	115	115		인천시 남동구	대지	115.0			-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현금자					
						인천 남동 만수동 1-121	박상태					

83	만수2동	1-122	대지	139	139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22	김성범	대지	106.0		33.0
						인천 남동 만수동 1-122	윤범상				
						인천 남동 만수동 1-122	박병진				
84	만수2동	1-123	대지	133	133	인천 남동 만수동 1-123	고순식	대지	133.0		-
						인천 남동 만수동 1-10	손석규				
85	만수2동	1-124	대지	65	65	인천 남동 만수동 1-124	이영식	대지	65.0		-
86	만수2동	1-125	대지	92	92	인천 남동 만수동 1-152	최희식	대지	92.0		-
						인천 북구 갈산동 104	정영자				
87	만수2동	1-126	대지	92	92	인천 중구 도원동 69-22	유재길	대지	92.0		-
						인천 남동 만수동 1005 주공아파트 805-1006호	최미숙				
88	만수2동	1-127	대지	98	98	인천 남동 만수동 1-127	김정숙	대지	98.0		-
						인천 남동 만수동 1-10	이수도				
89	만수2동	1-128	대지	68	68	인천 남동 만수동 1-128	박근순	대지	68.0		-
90	만수2동	1-129	대지	104	104	인천 남동 만수동 1-129	김태환	대지	72.0		32.0
							정기정				
							인천시 남동구				
91	만수2동	1-130	대지	92	92		인천시 남동구	대지	92.0		-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박배상				
						인천 남동 만수동 1-130	유심준				
92	만수2동	1-131	대지	92	92	인천 부평 십정동 410-2 무지개빌라 305호	한상준	대지	92.0		-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김갑환				

99	만수2동	1-138	대지		32		인천 남동 만수동 1-137	최소옥				
100	만수2동	1-139	대지	109	32		인천 남동 만수동 1-138	이정운	대지	32.0		-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2 우주아파트 105-110	김소자	대지	96.0		13.0
							인천 남동 만수동 1-139	이향순				
101	만수2동	1-140	대지	33			인천 남구 주안동 391-18	인천시 남동구 장세용	대지	33.0		-
102	만수2동	1-141	대지	104			인천 남동 만수동 1-141	박장분	대지	104.0		-
							인천 남동 만수동 산10	이원식				
103	만수2동	1-142	대지	121			인천 남동 도림동 372-23	인천시 남동구 권상구	대지	121.0		-
							인천 남동 간석동 519-4 한진아파트 1-406호	유경순				
104	만수2동	1-143	대지	115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인천시 남동구 김용기	대지	115.0		-
105	만수2동	1-144	대지	223			인천 부평 부평동 625-2 삼본아파트 3동 202호	최이원	대지	222.0		1.0
							인천 남구 구월동 300	추육만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김대순				
106	만수2동	1-145	대지	98			인천 남동 만수동 5-321 아주아파트 나동 207호	인천시 남동구 정순례	대지	98.0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15	이현순				
107	만수2동	1-146	대지	98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200-15	인천시 이현순	대지	98.0		-

108	만수2동	1-147	대지	36	36	인천 남구 도화동 521-5	이준용	대지	36.0			-
109	만수2동	1-148	대지	92	92	인천 남동 만수동 1-148	이무현	대지		72.0		20.0
110	만수2동	1-149	대지	77	77	인천 남동 만수동 1-149	안철남	대지		55.0		22.0
111	만수2동	1-150	대지	61	61	인천 남동 만수동 1-150	김명숙	대지		34.0		27.0
112	만수2동	1-151	대지	83	83		인천남동구	대지		66.0		17.0
113	만수2동	1-152	대지	133	133	인천 남동 만수동 1-152	최희식	대지	72.0			61.0
114	만수2동	1-153	대지	50	50	인천 남동 만수동 1-153	신용준	대지	50.0			-
115	만수2동	1-154	대지	104	104	고양일산 주엽동 8 문춘마을 605-1401호	한승자	대지	64.0			40.0
						인천 남동 만수동 1-154	김명환					
						인천 남동 만수동 6-21 신한아파트 1동 606호	홍태영					
116	만수2동	1-155	대지	37	37	인천 남동 만수동 1-155	박동엽	대지	17.0			20.0
117	만수2동	1-156	대지	269	269	인천 남동 만수동 1-156	김정숙	대지	269.0			-
						인천 남동 만수동 1-156	강대성					
118	만수2동	1-157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5-307 삼부아파트 라-404	임애순	대지	66.0			-
119	만수2동	1-158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158	김현숙	대지	53.0			13.0
120	만수2동	1-159	대지	62	62	인천 남동 만수동 80-25	한예선	대지	62.0			-
121	만수2동	1-160	대지	98	98	인천 남동 만수동 1-160	박경녀	대지	98.0			-
						인천 남동 만수동 1-160	박경녀					
						인천 남동 만수동 1-160	이준환					
						인천 남동 만수동 1-160	이진주					
122	만수2동	1-191	대지	36	36	인천 남동 만수동 1-192	공석만	대지	1.0			35.0

123	만수2동	1-192	대지	35	35	인천 남동 만수동 1-15	공석만	대지	17.0			18.0
124	만수2동	1-193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117	김기준	대지		66.0		-
125	만수2동	1-194	대지	46	46	인천 남동 만수동 1-194	김청길	대지	46.0			-
126	만수2동	1-195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95	김국성	대지	33.0			-
127	만수2동	1-196	대지	45	45	인천 남동 만수동 1-196	한봉남	대지	45.0			-
128	만수2동	1-197	대지	34	34	인천 남동 만수동 1-197	박인자	대지	34.0			-
129	만수2동	1-198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75	전예표	대지	33.0			-
130	만수2동	1-199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80-755	이간란	대지	33.0			-
131	만수2동	1-200	대지	44	44	인천 남동 만수동 1-93	송장식	대지	44.0			-
132	만수2동	1-201	대지	22	22		인천시	대지	22.0			-
						인천 남동 만수동 1-201	임덕술					
133	만수2동	1-202	대지	39	39	인천 남동 만수동 1-96	최봉식	대지	39.0			-
134	만수2동	1-203	대지	51	51		인천남동구	대지	51.0			-
135	만수2동	1-204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204	안원복	대지		66.0		-
136	만수2동	1-216	대지	5	5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홍성근	대지				5.0
137	만수2동	1-217	대지	24	24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정동규	대지			2.0	22.0
138	만수2동	1-218	대지	40	40	인천 남동 만수동 산1-10	설재호	대지	40.0			-
139	만수2동	1-219	대지	36	36	인천 남동 간석동 519-4 한진아파트 1동 1103호	조승호	대지	19.0			17.0
140	만수2동	1-220	대지	36	36	인천 남동 주안동 1423-11 우정빌라 302호	임순호	대지	21.0			15.0
141	만수2동	1-221	대지	74	74	인천 남동 만수동 1-221	백숙자	대지	74.0			-
142	만수2동	1-222	대지	63	63	인천 남동 만수동 1-104	전정숙	대지	63.0			-

143	만수2동	1-223	대지	69	69	인천 남동 만수동 1-223	김영욱	대지	69.0			-
144	만수2동	1-224	대지	30	30	인천 남동 만수동 1-159	강점덕	대지	30.0			-
145	만수2동	1-225	대지	44	44	인천 남동 만수동 1	주명운	대지		26.0		18.0
146	만수2동	1-226	대지	71	71	인천 남동 만수동 1-226	이영철	대지	71.0			-
147	만수2동	1-227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227	위태심	대지	33.0			-
148	만수2동	1-228	대지	59	59	인천 남동 만수동 925-2 302호	임낙기	대지	59.0			-
							대한보증보험주					
149	만수2동	1-229	대지	46	46	인천 남동 만수동 1-110	박성환	대지		46.0		-
150	만수2동	1-230	대지	25	25	인천 남동 만수동 1-110	유병우	대지		22.0		3.0
151	만수2동	1-232	대지	43	43	인천 남동 만수동 1-101	임복희	대지	43.0			-
152	만수2동	1-233	대지	31	31	인천 남구 도화동 601-1 동아아파트 3동 701호	국중권	대지	31.0			-
153	만수2동	1-235	대지	36	36	인천 남동 만수동 1-235	박금옥	대지	36.0			-
154	만수2동	1-236	대지	17	17	인천 남동 만수동 1-91	최현준	대지	17.0			-
155	만수2동	1-237	대지	41	41	인천 남동 만수동 1-120	박종산	대지	41.0			-
156	만수2동	1-238	대지	35	35	인천 남동 만수동 1-78	윤백수	대지	6.0			29.0
157	만수2동	1-239	대지	38	38	인천 남동 만수동 1-102	정두영	대지	38.0			-
158	만수2동	1-240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240	육동근	대지	33.0			-
159	만수2동	1-247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76	육광식	대지	33.0			-
160	만수2동	1-248	대지	33	33	광명 하안동 200 고층주공아파트 1301동 318호	이형우	대지	33.0			-
161	만수2동	1-250	대지	57	57	인천 남동 만수동 1-250	배성길	대지	31.0			26.0
162	만수2동	1-251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251	소호영	대지	44.0			22.0

163	만수2동	1-252	대지	40	40	인천 남동 만수동 1-67	이우삼	대지	29.0			11.0
164	만수2동	1-253	대지	37	37	웅인 수지읍 죽전리 488 수지2차 길훈아파트 203-1201호	염미자	대지	37.0			-
165	만수2동	1-254	대지	46	46	인천 남동 만수동 1-2	정원교	대지	15.0			31.0
166	만수2동	1-257	대지	65	65	인천 남동 만수동 1-73	오종태	대지	65.0			-
167	만수2동	1-258	대지	41	41	인천 남동 만수동 1-108	이난형	대지		41.0		-
168	만수2동	1-259	대지	35	35	서울 노원 공릉동 370-3 공릉언립 디동 102호	김대우	대지		35.0		-
169	만수2동	1-260	대지	69	69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158-1	이항재	대지	69.0			-
170	만수2동	1-261	대지	26	26	인천 남동 구월동 24 주공아파트 221동 508호	박대원	대지	18.0			8.0
171	만수2동	1-262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262	김용기	대지		26.0		7.0
172	만수2동	1-263	대지	47	47	인천 남동 만수동 1-257	오정운	대지				47.0
173	만수2동	1-264	대지	49	49	인천 남동 만수동 1	강삼순	대지	49.0			-
174	만수2동	1-265	대지	76	76	인천 남동 만수동 1-107	박성우	대지		61.0		15.0
						인천 남동 만수동 1-107	박성진					
175	만수2동	1-266	대지	70	70	인천 남동 만수동 1-115	최승호	대지	50.0			20.0
176	만수2동	1-267	대지	49	49	인천 남동 만수동 1-158	김현숙	대지	49.0			-
177	만수2동	1-268	대지	50	50	인천 남동 만수동 20 주공아파트 605동 304호	김성민	대지	50.0			-
178	만수2동	1-269	대지	31	31	인천 남동 만수동 1-80	이명훈	대지	31.0			-
179	만수2동	1-270	대지	54	54	인천 남동 만수동 1-153	김호영	대지	54.0			-
180	만수2동	1-271	대지	68	68	인천 남동 만수동 1-271	이경옥	대지	68.0			-
181	만수2동	1-272	대지	106	106	인천 남동 만수동 1-158	조순자	대지	81.0			25.0
182	만수2동	1-273	대지	39	39	인천 남동 만수동 1-172	이응구	대지	39.0			-

183	만수2동	1-275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25	박학봉	대지	33.0		-
184	만수2동	1-276	대지	42	42	인천 남동 만수동 1-89	이상석	대지	30.0		12.0
						인천 남동 만수동 1-89	박경수				
						인천 남구 구월동 24 주공아파트 231-103호	박대원				
185	만수2동	1-277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0	유종실	대지	33.0		-
186	만수2동	1-278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138	차기남	대지	33.0		-
187	만수2동	1-279	대지	44	44		인천남동구	대지		44.0	-
188	만수2동	1-280	대지	36	36	인천 남동 만수동 1-100	김용관	대지	36.0		-
189	만수2동	1-281	대지	33	33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910-5 천광원로 4-307	박종웅	대지	33.0		-
190	만수2동	1-282	대지	37	37	인천 남동 만수동 863-16 경인빌 라 A-303	표성순	대지	25.0		12.0
191	만수2동	1-283	대지	39	39	고양 일산 주엽동 8 문촌마을 1203동 303호	강춘자	대지	27.0		12.0
192	만수2동	1-284	대지	40	40	인천 남동 만수동 1-284	김남석	대지	18.0		22.0
193	만수2동	1-285	대지	86	86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	강영찬	대지	86.0		-
194	만수2동	1-292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87-13	이재상	대지		33.0	-
195	만수2동	1-293	대지	66	66	인천 남동 만수동 1-293	김신권	대지		66.0	-
196	만수2동	1-294	대지	71	71	인천 부평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4-1303	김영덕	대지	71.0		-
197	만수2동	1-296	대지	36	36	인천 남동 만수동 1005 주공아파트 804-1105호	김영애	대지	36.0		-
198	만수2동	1-297	대지	45	45	인천 남동 만수동 1-98	이홍세	대지	45.0		-
199	만수2동	1-298	대지	43	43	인천 남동 만수동 1-298	황경자	대지		43.0	-
200	만수2동	1-299	대지	33	33	인천 남동 만수동 1-299	김성진	대지	31.0		2.0
							남인천세무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3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개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구월동289번지부근 도로 <소로1-43호선> 외6개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가. 구월동289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소로1-43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289번지 일원
- 규 모 : L=62, B=10

나. 고잔동371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중로2108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371번지 일원
- 규 모 : L=720, B=15

다. 고잔동529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소로1-10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529번지 일원
- 규 모 : L=260, B=10

라. 논현동이삭.풍림아파트부근도로개설공사<소로1-8호선 및 중로2-109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이삭.풍림아파트부근
- 규 모 : 중로 L=290, B=9-10 소로 L=180 B=10

마. 운연동53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중로3-184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53번지 일원
- 규 모 : L=400, B=12

바. 구월동349-536번지부근주차장설치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349-536번지일원

가. 간석동37-264번지일원어린이공원조성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37-264번지 일원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 열람기간 : 2002. 5. 22 - 2002. 6. 7

5.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정비과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는
신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
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44호

인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위한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시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

□. 장수지역

- 위 치 : 인천 남동구 장수동일원(장수구획정리사업)
- 면 적 : 185,400m²(변경없음)
- 도시계획변경 내용
 - 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변경
 -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기준으로 조정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설정.

□. 서창지역

- 위 치 : 인천 남동구 서창동일원(서창구획정리사업)
- 면 적 : 427,415m²(변경없음)
- 도시계획변경 내용(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제2종일반주거지역중 일부지역 허용용도 변경
 - ⇒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일부지역 허용용도 변경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정비과 (☎032-453-269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6호

2002년도 『살기좋은아파트』 선정계획공고

우리구관내 우수공동주택 단지를 찾습니다.

공동주택운영·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동체문화 기법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2년도 남동구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2.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시상명 : 남동구 살기좋은아파트

☐ 선정대상

-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포함)단지
- 공고일 기준 2개년 이전에 입주하여 관리중인 주택
 - ※ 임대주택 및 주상복합단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살기좋은아파트로 기
선정된 공동주택은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절차

- 1단계 평가 : 서류심사
- 2단계 평가 : 제안설명 및 현장실사
- 3단계 평가 : 최종심의 후 “살기좋은아파트” 선정

☐ 평가내용

- 행정 업무 : 회계 관리, 사무 관리, 입 주자대표회의 운영, 인사관리
- 기술 관리 : 환경·위생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 공동체 생활 :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생활공간 및 시설 등
- 물자 절약 및 재활용 : 에너지 절약, 수도물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등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

☐ 시상내역

- 최우수 살기좋은아파트 1개 단지 : 표창 및 부 상금
 - 우수 살기좋은아파트 1개 단지 : 표창 및 부 상금
- (살기좋은아파트로 선정된 2개 단지 인천시 살기좋은 아파트 후보 추천,
인천시 살기좋은아파트 선정시 표창제외 및 차 순위 단지 표창)

☐ 신청서류

- 소정양식 및 평가항목별 시행내용 및 증빙자료(우리구 건축과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www.namdong.inchon.kr/실과소/건축과/공지사항 다운로드

☐ 신청 마감 : 2002년 7월 31일 18시 (우리 구 건축과)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발표 : 2000. 8. 31일경 (예정) -개별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453-2655(담당자 박인수)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7호

2002년종합토지세과세자료변동신고·공람및이의신청에관한공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1 신고의무 및 동법 제234조의22 공람 및 이의 신청 규정에 의거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관한 변동신고·공람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2.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아 래 -

1. 일 시

- 신고접수 : 2002. 6. 1. ~ 6. 10(10일간)
- 공 람 : 2002. 6. 1. ~ 6. 15(15일간)
- 이의신청 : 2002. 6. 16. ~ 6. 25(10일간)
- ※ 이의신청서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비치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3. 내 용

- 공 람 :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사항
- 신 고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전에 소유권,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변경내용
- 이의신청 :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48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인천장수지구> ”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택지개발사업<인천장수지구>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
4. 열람기간 : 2002 5. 23 - 2002. 6. 8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면
신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
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0호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032-453-26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 5.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교통시설(도로)

구분	노선 번호	지구명	사업개요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고
			연장(m)	폭(m)	사업단계	사업기간		
중2	108	남동	1590	15	2단계	'06~	4,750	
	109	남동	352	15	2단계	향후	612	
	136	남동	430	15	2단계	'05~'06	532	
	183	남동	470	15	2단계	향후	2,479	
중3	46	남동	580	12	2단계	'05~	1,242	
	69	남동	2000	12	2단계	'05~'06	6,170	
	70	남동	725	12	2단계	향후	1,855	
소1	1	고잔지구	615	10	1단계	'03~'04	2,171	
	1	구월구획외	630	10	2단계	'05~	2,204	
	2	고잔지구	168	10	1단계	'03~'04	418	
	2	만수동	450	10	2단계	향후	1,002	
	3	고잔지구	150	10	2단계	'05	719	
	3	구월구획외	64	10	1단계	'02	70	
	3	논현지구	50	10	2단계	'05	135	
	4	고잔지구	230	10	2단계	'06~	1,045	

구분	노선 번호	지구명	사업개요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고
			연장	폭	사업단계	사업기간		
소1	4	구월구획외	61	10	1단계	'03	340	
	4	논현지구	324	10	2단계	향후	450	
	5	고잔지구	1244	10	1단계	'03~'04	4,886	
	6	논현지구	134	10	2단계	향후	178	
	7	고잔지구	1440	10	2단계	향후	3,995	
	7	논현지구	1174	10	2단계	향후	4,102	
	8	고잔지구	610	10	1단계	'03~'04	1,817	
	9	고잔지구	497	10	1단계	'03~'04	901	
	10	고잔지구	1180	10	2단계	향후	3,406	
소2	1	논현지구	50	8	1단계	'02	24	
	2	고잔지구	1170	8	1단계	'03~'04	3,067	
	3	간석동	100	8	1단계	'02	86	
	3	논현지구	100	8	1단계	'03~'04	481	
	8	간석만수	186	8	2단계	향후	439	
	8	논현지구	264	8	2단계	향후	1,185	
	10	간석만수	1463	8	2단계	'05	447	
	18	남촌지구	624	8	1단계	'03	260	
	19	남촌지구	213	8	1단계	'04	442	
소3	1	간석만수	372	6	2단계	'05~'06	234	
	2	간석만수	100	6	1단계	'03	77	
	4	간석만수	55	6	1단계	'04	152	
	55	간석만수	490	6	2단계	향후	687	
	58	간석만수	120	6	2단계	향후	408	

○ 도시공간시설(공원)

시설명	공원명	면 적 (㎡)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고
			사업단계	사업기간		
어린이공원	공원촌공원	3123	2단계	향후	937	
	논현공원	41282	2단계	향후	13,171	
	수산공원	37125	2단계	향후	5,092	

○ 공공문화시설(학교)

시설명	학교명	면 적 (㎡)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고
			사업단계	사업기간		
초등학교	십정남초교	9778	1단계	'03	11,57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
-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하는 청문제도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2년 6월 1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참조(재무과장), 전화번호(453-22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주소, 성명(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시 조례등 상위법 개정
-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축소(안 제7조제3항)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 기준 마련(안 제25조제2항)
 -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않음(안 제28조제1항)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안 제28조 제2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는 청문제도 도입(안 제28조의2)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 규정(안 제25조의2)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을 재산관리관이 함(안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2항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가”로 한다.

제14조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로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삭제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공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29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 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이 제23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3조의2 단서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대부료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신규대부등(재계약포함)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공유재산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 (생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제6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신설〉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관리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지역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토지상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재산 중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관리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은----- ② <삭제> ③ <삭제>

현행	개정안
2. 일반시지역 : 6백제곱미터이하 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일단의 토지 면적이 9백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④ (생략)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6 (생략)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략) 1~3 (생략) 4.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사용·수익허가하여야----- ----- -----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사용·수익허가할----- ----- 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 ----- 1~6 (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수익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사용·수익허가부를----- -----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현행	개정안
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생략) 6.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 7~9 (생략) ③~④ (생략)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u>1,000분의 25</u>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 ③<u>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u>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40</u>으로 한다. 1~2 (생략) ⑤ (생략)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25</u>로 한다. 다만,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u> ⑦~⑧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u>----- 7~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u>1,000분의 50이상으로</u> ----- ----- <u>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u> ②----- -----<u>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u>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u>1000분의 40이상으로</u>-----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u> 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 (생략)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6 (생략)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용----- ----- ----- ----- ----- -----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 -----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 1~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u><신설></u>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공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29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신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이 제23조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신설
- 기부체납, 매각신청, 교환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세분화하여 관리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2년 6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참조(재무과장), 전화번호(453-22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주소, 성명(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자치구의 공유재산”을 “남동구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4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중 “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분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주식, 출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신탁수익권)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별지 제23호의2(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안

제

영

면

(별표 1)

설 계 기 준

- 아래 기준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1. 사무실 (단위 : m²)

구 분	기 관 장	부 기 관 장	실 국 장	과 장	담	담	차	원
구	99	33	-	16.5	6.0	6.0		5.0
동	23	9.9	-	-	6.0	6.0		5.0

2. 부대시설

1) 회의실

(가) 구

○ 대회의실 $0.6\text{m}^2 \times (\text{본청공무원수} + \text{동근무공무원수}) \times 80/100$

○ 소회의실 및 상환실 $3.3\text{m}^2 \times (6\text{급이상수} + \text{동장수}) \times 80/100$

(나) 동

○ 회의실 $3.3\text{m}^2 \times (\text{공무원수} + \text{통장수}) \times 80/100$

2) 전파교환실(동 제외)

(가) 좌석식

좌 석 수	1	2	3	4	5	6	7	8	9	10
면 적 (m ²)	5.0	6.9	6.9	10.2	10.2	14.9	17.2	20.2	24.1	24.1

※ 1좌석 : 수동회선 30회선

(나) 자동식(100회선 기준)

○ 기 계 실 : 50m^2 이상

○ 중계대실 : 13.2m^2 이상

○ 축전지실 : 9.9m^2 이상

○ 지자재실 : 9.9m^2 이상

○ 휴 게 실 : 13.2m^2 이상

3) 숙직실 : $3.3\text{m}^2 \times \text{숙직인원}$, 최소면적 9.9m^2

4) 안내 및 수위실 : $1.7\text{m}^2 \times \text{인원수} \times 1/3$, 최소면적 6.6m^2

5) 변소 및 세면장 : $0.3\text{m}^2 \times \text{공무원수}$, 최소면적 7m^2

< 삭 제 >

안

정

기

< 사 제 >

6) 주차장

- 대형차 : 대당 20m² + 출입지역
 ○ 중형차 : 대당 15m²
 ○ 소형차 : 대당 13.2m²

7) 운전원 대기실 : 1.6m' × 운전원수

8) 식 당 : 0.9m' × 공무원수 × 1/3(동계외)

9) 교통통선부문(현관, 복도, 계단)

- 각실 면적의 20~40%선

10) 민원대기실 : 5m' × 민원담당공무원수 × 1/2

11) 기 자 실 : 5m' × 출입기자수 (동계외)

12) 티 티 실 : 3.3m' × 대수 (")

13) 행정자료실 : 3.3m' × 공무원수 × 1/10 (")

14) 발 간 실 : 6.6m' × 인원수 (")

15) 이 발 소 : 6.6m' × 공무원수 × 1/100 (")

16) 의 무 실 : 6.6m' × 공무원수 × 1/100 (")

17) 물품창고

- (가) 구 : 0.8m' × 공무원수

- (나) 동 : 2m' × 공무원수

18) 보 이 라 실 : 난방면적 × 25/1,000

3. 지하시설

- 건물면적의 1/4 이상

4.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

구 분	계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장실	의원 사무 실	의원 사무 실	타
화 보 기 준		의원수 × 6.6 m' + 방청석 (의원수 × 2 × 1.7m')	의원수 × 5m' × 1/2	구청장실 규모	의원수 × 5m'	의원수 × 5m'	부속 공 용 면적 등
면적(m ²)	562 ~ 827	149 ~ 248	33 ~ 66	99 ~ 132	76 ~ 126	26 ~ 50	179 ~ 205

안 정 개 제

(별표2)

지 방 청 사 설 계 규 모

구	분	건 물 연 면 적	비	고
자	치 구 청 사	5,600㎡이상		
동	청 사	330㎡이상		

※ 건물면적은 장래 전량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삭 제 >

인 정 개 시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20 년 월 일 본인이 채출 신고한 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신고재산에 대한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신고대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체없이 근거자료를 갖추어 증인으로 출두하겠으며 증인출두로 인한 비용은 일체 징구치 않는다. 3.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채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귀구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이 수령한 보상금은 이를 지체없이 반납한다. 4. 기타 본인이 신고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구의 손해는 지체없이 변상 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남 동 구 청 장 귀하
------------------	---

< 각 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 1~2 <생략> <신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 1~2 <생략> <신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원행과 같음> 1~2 <원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원행과 같음> 1~2 <원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원행과 같음> 1~2 <원행과 같음>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생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생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원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원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원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원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원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원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 ----- -----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 ----- -----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 ----- -----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생략>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한 때 변상금 징수) <생략>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생략>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생략> 제18조(여구의 해식) <생략>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생략>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한 때 변상금 징수) <생략>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생략>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생략> 제18조(여구의 해식) <생략>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원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한 때 변상금 징수) <원행과 같음>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원행과 같음> 제18조(여구의 해식) <원행과 같음>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원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한 때 변상금 징수) <원행과 같음>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원행과 같음> 제18조(여구의 해식) <원행과 같음>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원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한 때 변상금 징수) <원행과 같음>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원행과 같음> 제18조(여구의 해식) <원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 을은 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4 <생 략>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인계등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7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제5조 ①을은 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자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8조 ----- 해제·해지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①----- 해제·해지를

원	형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안하는 경우에는 대부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안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안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제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임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②-----갑이 해제·해지하는-----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해제·해지된 경우----- 제11조-----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취상 대부제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원행과 같음> 제13조 <원행과 같음> 제14조 <원행과 같음>	<이하 원행과 같음>
년 월 일 임대자(갑) 남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지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원

형

개 정 안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 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 과 내 용				
제	산	의	표	시
소	제	지	지	적
		점유면적		부과기간
		(㎡)		
				예상변상금
				(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불임 1.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귀하

구 분	개 정 내 역	구 분 내 역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뒷면) ※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처 리 기 관</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점 유 · 사 용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td> <td></td> </tr> </table>	처 리 기 관	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변상금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발 송 제 출 변상금부과과고지 변상금부과과고지
처 리 기 관	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원		개		정		안					
〈별지 제23호의2(2)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현	개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자치구의</u>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1~3 (생 략)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u>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u> 5. (생 략) ③ <u>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u>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u> 제12조(기부채납) ① (생 략) 1~4 (생 략)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8 (생 략) ② (생 략) 제13조(매각신청) 1~3 (생 략)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5. (생 략) 6. 지적도 사본 7~8 (생 략)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남동구의</u>----- -----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u> 5. (현행과 같음) ③ <u>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u>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u> 제12조(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삭 제)</u> 6. <u>(삭 제)</u>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매각신청) 1~3 (현행과 같음) 4.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u>(삭 제)</u> 7~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교환) 1~5 (생략) 6. 인감증명서 7~8 (생략) 제21조(등기 수속등)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신설> 제34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지방청사설계규모는 별표2에 의한다.	제16조(교환) 1~5 (현행과 같음) 6. <u>(삭제)</u> 7~8 (현행과 같음) 제21조(등기 수속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감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분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2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54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인천대공원조성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2. 5.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인천대공원조성공사>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 인천대공원관리사업소
4. 열람기간 : 2002. 5. 25 - 2002. 6. 10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면
신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
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